마포구 동교동157-1 역세권활성화시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시보고서

2020. 9. 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8. 26.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0. 9.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1) 제안이유

청년가구가 밀집한 홍대입구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삶터와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콤팩트시티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2)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현황

가. 정비사업 개요

1) 위 최 :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KT 신촌지사)

2) 면 적: 4,727㎡

3) 용도지역 :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근린상업지역

4) 시 행 자 : ㈜케이리얼티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추진경위

-' 19. 06. : 역세권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서울시)

-' 19. 09. : 시범사업지 5개소 선정

(마포구, 도봉구, 노원구, 동작구, 관악구)

-' 19. 09. ~ ' 20.02. : 사업계획 구상(안) TF회의 5회

-' 20. 01. ~ ' 20.02. : 시범사업 지원 자문단 회의 2회

-' 20. 06. : 사업제안서 접수

-' 20. 07.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T'8 PI(%)	H #
	합 계	4,727.0	_	4,727.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727.0	감) 4,727.0	-	-	
상업지역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증) 4,727.0	4,727.0	100.0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 설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4,727.0 m²	

라.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도면 표시번호	,	결 정 사 유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불허	는허 -도 A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방향과 정합성 확보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	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고 지정 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	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8	용도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	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	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2)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 내용	申立
건폐율	– 60% ০) ই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준용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60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높이	- 80m 이하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높이 지침 준용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한계선	동교로(15m)변	: 대지경계로부터 5m 후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동교로(25m)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양화로19길(8m)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월드컵북로2길(8m)변	: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일부)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전면	공지	도로변 건축한계선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월드컵북로2길변 차도부속형)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도 참고
공개	공지	동교로 및 월드컵북로2길 가각부에 공개공지 조성	위치 지정(2개소)

바.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 공공기여 계획

구 분	기준(허용)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용적률			구 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1 11 1
				합 계	100.0%	1,541.71 m²	792.05 m²	749.66 m²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250%		부지면적의 29.0%이상	공공임대오피스	42.4%	654.23 m²	229.71 m²	424.52 m²	-
				공공임대주택	20.5%	316.28 m²	316.28 m²	_	-
				공영주차장	37.1%	571.20 m²	246.06 m²	325.14 m²	-
					계획 1,	541.71 m² (32.6	51%)		_

2)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

구 분	총 공공기여 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비율	지상연면적	지하연면적	연면적	비고
공공 임대오피스	654.23 m²	229.71 m²	424.52 m²	42.4%	1,734.99 m²	812.74 m²	2,547.73 m ²	B1층 2~3층
공공 임대주택	316.28 m²	316.28 m²	_	20.5%	3,458.04 m ²	_	3,458.04 m ²	5~6층
공영주차장	571.20 m²	246.06 m²	325.14 m²	37.1%	_	2,729.04 m²	2,729.04 m ²	B2층
계	1,541.71 m²	792.05 m²	749.66 m²	100.0%	5,193.03 m ²	3,541.78 m²	8,734.81 m²	-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 나. 주민공람 : 2020. 7. 9. ~ 2020. 7. 23.(의견 없음)

3. 검토의견(신준호 전문위원)

가. 입안 배경

-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KT 신촌지사)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2019.09.23.)된 지역으로
- 서울에서 청년 1~2인 가구가 가장 밀접한 곳 중 하나로 보행・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역세권의 저이용, 가로 및 보행여건 미흡, 청년 활동 시설 부족 등 직주근접을 위한 다양한 필요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콤팩 트시티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변경 사항 검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역세권 콤팩트시티' 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신설하고,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함.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가구 및 획지 계획은 단일 소유 필지로 전체를 획지로 지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방향과 정합성 확보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여 불허와 1층 지정용도 계획을 수립함.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의 건축한계선은 보도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기 위해 대지경계로부터 2~5m 후퇴하였고 공공기여 계획은 공공임대오피스,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면적의 29% 이상 확보하는 계획임.

다. 종합의견

○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KT 신촌지사)는 서울시 '역세권 콤팩트시티' 균형발전 5개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교통이 편리하고 역세권 인근 토지를 맞춤형 고밀・복합개발하여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역세권 활성화'를 본격화하는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지역→근린사업지역)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는 용적률과 사업성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인 오피스, 상가, 주택과 공용주차장 등의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으로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지역맞춤형 공공시설 공급과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까지 갖출 수 있는 기회로 보임.

다만,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지만, 주택의 실수요자를 청년 등의 1~2가구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사항으로 중산층 등이 필요한 주택공급의 체감도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주변 보차혼용도로의 구분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겠으며, 공용주차장의 경우 세입확보 및 지역민원 해결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운영권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